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
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16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금고 보관·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 명을 포함하도록 제명 수정(제명)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정비(안 제2조)
- 다.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제5항 신설)
- 라. 상품권 운영자금의 이자수익 등 처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)
- 마. 상품권 할인판매율 예외 규정 단서 신설(안 제6조제2항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4조의2, 제6조, 제15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금고 보관·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조례명에 자치구명이 금천구를 포함하였고
 -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“판매대행점”의 용어는 삭제하고 “금천G밸리사랑상품권”, “사용자”, “추가충전금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.
 - 안 제4조제5항에서는 “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“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하고,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
- 안 제4조의2 제4항에서는 “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의 단서를 규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됨이 없고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「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」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2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랑상품권”이란 지역상품권,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(이하 “상품권발행자등”이라 한다)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.
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3. “가맹점”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(이하 “개별가맹점”이라 한다)
 - 나.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(이하 “환전대행가맹점”이라 한다)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

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의2(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“상품권운영자금”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0. 19.]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9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